

고시 제 호

홍수관리구역의 지정(또는 변경·폐지) 고시

「하천법」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또는 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)를 ○○○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  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| 하천명칭 | 하천등급 |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|    |        | 면적(㎡) | 지정(변경·폐지)일, 사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| 기점         | 종점 | 거리(km)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
첨부서류

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